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기술사업화 및 개방형 혁신 주관기관 모집 공고

초격차 스타트업의 기술 완성·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과 국내외 대·중견 협업 지원을 수행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기술사업화, 개방형 혁신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모집개요

### 1 선정개요

- 선정규모 : ① 기술사업화 8개 기관 (8개 세부기술별 1개 기관)  
② 개방형 혁신 1개 기관 (13개 세부기술 총괄 1개 기관)
- 협약기간 : 2년(기본협약, '25~'26년) + 1년(협약연장, '27년)

\* 선정 주관기관과 기본협약(2년) 이후 별도 평가를 통해 연장여부(1년) 결정

#### < 신규 주관기관 모집분야 및 선정규모(안) >

기술분야	선정규모(안)	
	기술사업화 (8개 기관)	개방형 혁신 (1개 기관)
1) 시스템반도체	1개 기관 선정	1개 기관 선정 (1개 기관이 전 기술분야 담당)
2) 바이오헬스 - 신약·소재	1개 기관 선정	
3) 바이오헬스 - 의료기기·헬스케어	1개 기관 선정	
4)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1개 기관 선정	
5) 친환경·에너지 - 친환경(ccus 등)	1개 기관 선정	
6) 친환경·에너지 - 에너지 발전·효율화	1개 기관 선정	
7) 로봇	1개 기관 선정	
8) AI·빅데이터	1개 기관 선정	
9)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신규 선정 없음)	
10) 우주·항공	(신규 선정 없음)	
11) 해양	(신규 선정 없음)	
12) 차세대 원전	(신규 선정 없음)	
13) 양자 기술	(신규 선정 없음)	

\*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 현황·결과 등에 따른 변동 가능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개요 >**

- ◆ **(사업명) 국문**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영문** : DIPS 1000+ (Deeptech Incubator Project for Startup 1000+)
- ◆ **(사업개요)**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며 국가 미래를 이끌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사 이상 발굴·육성
- ◆ **(지원대상)** 초격차 10대 기술(13개 세부 기술 분야)를 영위하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
- ◆ **(지원기간)** 기본지원 3년(선정기업 전체) + 후속지원 2년(상위 10% 선별)으로, 최대 5년 이내
- ◆ **(지원내용)** 선정 기업에 최대 5년간, 최대 21억원의 <sup>1)</sup>기술사업화·R&D·스케일업 자금을 지원하며, <sup>2)</sup>기술개발 → <sup>3)</sup>개방형 혁신 → <sup>4)</sup>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의 성장 지원
  - 1) **성장자금** : 최초 3년간 기술사업화(최대 6억원), R&D(최대 5억원), 지원 후 후속 스케일업(2년간 최대 10억원) 직접 지원, 정책자금·기술보증 등 연계 지원
  - 2) **기술개발** : 초격차 분야별 기술 전문기관(⇒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을 분야별 스타트업과 매칭하여, 기술 완성·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3) **개방형 혁신** : 대·중견 네트워크, 협업 매칭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 개방형 혁신 주관기관)을 스타트업과 매칭하여, 스타트업별 국내외 대·중견 협업 지원
  - 4) **투자유치** : 국내외 AC·VC 네트워크, 투자지원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 투자유치 주관기관)을 스타트업과 매칭하여, 스타트업별 국내외 신규·대형 투자유치 지원
- ◆ **(주관기관)** 10대 기술분야별 기술사업화, 개방형 혁신, 투자유치 주관기관을 각 선정하며, 각 주관기관은 기술·역할에 따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



## ② **주관기관 주요 과업 (기술사업화)**

① **[공통] 필수 프로그램** : 스타트업의 기술완성·고도화 관련 실증, 글로벌 진출 관련 인증·인허가 획득을 특화지원하며, 기타 행사 개최

1) **실증지원** : 기술별 글로벌 시장 현황(경쟁사 대비) 기반 스타트업의 기술완성·고도화를 위한 시험·분석·평가 등 실증을 지원

2) **글로벌 인증·인허가 획득** : 미국·유럽 등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인허가 획득을 지원 (글로벌 인증·인허가 필수)

3) **DIPS Tech Con** : 초격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년 연말(11월 내외) 개최되는 기술 포럼(DIPS Tech Con)을 위한 계획 수립

\* DIPS Tech Con은 전담-주관기관이 함께 개최하는 공동 행사로, 전담기관은 행사 장소·일정 등 계획 전반을 수립, 주관기관에서 세부 기술포럼을 운영 (주제, 연사 등)

\*\* 신청기관은 초청연사, 포럼주제, 운영방식 등 계획 수립 후 전담기관과 추후 협의

\*\*\* 2024 DIPS Tech Con('24. 11. 26. ~ 11. 27, 콘래드 호텔) 참고

4) **회계교육** : 선정된 스타트업 대상 정부지원금의 기준, 방법 등 관련 지정 회계법인(전담기관 지정) 담당자의 교육 운영 (연초 1회)

② **[공통] 자율 프로그램** : 기술·산업 특성에 따라, 스타트업의 기술 고도화, 창업사업화를 지원 프로그램 계획을 자율 수립·운영

1) **기술고도화** : 기업별 핵심·원천기술이 글로벌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개발·개선·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구성

\* (예) 기업별 기술 개선과제별 전문가(내외부 연구자 등) 매칭을 통한 기술 컨설팅 스타트업과 주관기관간 공동 혹은 위탁 R&D 수행 등

2) **창업사업화** : 완성·고도화된 기술·제품·서비스의 국내외 시장 진출·확대 등 지속 성장을 지원할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구성

\* (예) 기업별 진출 가능한 글로벌 시장(마켓) 발굴 및 진입 지원 스타트업의 경영 관련 애로해결 컨설팅 등

③ **[공통] 협업 프로그램** : 초격차 스타트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타 초격차 주관기관\* 협업 통한 프로그램 (연 1개 이상)

\* 타 기술사업화 주관기관 및 타 역할(개방형 혁신, 투자유치) 주관기관 전체 포함

※ 필수·자율 프로그램 항목별 프로그램 수 제한 없음

④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일관지원** : 시스템반도체 분야 주관기관은 초격차 프로젝트와 함께, '팹리스 일관지원'을 동시 수행

< 팹리스 일관지원 개요 >

- ◆ **(추진목적)** 미래 산업의 두뇌인 팹리스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특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을 선도할 유망 팹리스 발굴·육성 및 국내 팹리스 생태계 강화
- ◆ **(지원방향)** 팹리스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를 '개발기 → 성장기 → 스케일업'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팹리스의 애로를 기반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및 창업사업화자금 지원

< 팹리스 일관지원 성장단계 구분 >

구분	단계별 개요
개발기	·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준비하는 단계 (매출액 x, 아이디어 검증)
성장기	·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 국내 수요기업에 판매하고 매출 발생 단계
스케일업	· 매출 급증이 예상되고, 글로벌 수요가 있어 해외 진출이 가능한 단계

- ◆ **(지원대상)** 창업 10년 이내 팹리스 (※ AI 팹리스를 20% 이상 선정 예정)
- ◆ **(지원규모)** 국내 팹리스 스타트업 30개사 (※ AI 팹리스 6개사 이상 선정 예정)
- ◆ **(지원내용)** ① 성장단계별 특화 프로그램 (☞ 주관기관 기획·운영)  
 ② 창업사업화 자금 (☞ 전담기관 지급, 주관기관·회계법인 관리)
- ◆ **(추진일정)** 모집공고('25. 2월초) → 신청·접수('25. 2월말) → 선정평가(~'25. 4월말)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25. 12월) ※ 2025년 초격차 프로젝트 스타트업 모집·선정과 동일

- 1) **팹리스 모집** : 국내 팹리스 특화 협·단체 협업 등 국내외 유망 팹리스 대상 홍보를 통한 최상위 팹리스 스타트업 모집
- 2) **프로그램 구성** : 성장단계별 특화 지원 프로그램 구성·운영

<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구성(안) >

성장단계	프로그램	성장단계	프로그램	성장단계	프로그램
공통	전문전시회 참가	성장기	MPW 지원	스케일업	(시)제품 검증
개발기	설계자산·검증Tool		기술 멘토링		샘플제조
	네트워킹		인력채용 연계		마케팅
	교육		이종기술 교류		현지사업화

- 3) **과제 진도 관리** : 선정된 팹리스의 정부지원금 집행 현황, 과제 진도를 관리 등을 통한 성공적 과제 완수 관리·지원
- 4) **기타 과업** :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전담기관의 요청사항

### 3 주관기관 주요 과업 (개방형 혁신)

① **필수 프로그램** : 초격차 챌린지(팹리스, 온디바이스 AI), 이노웨이브 등 스타트업 혁신성장을 위한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운영

1) **초격차 챌린지** : 유망 팹리스 생산애로 해소와 AI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챌린지 운영 효율화 방안 제안

< 초격차 챌린지 개요(24년 기준) >

구분	팹리스 챌린지	온디바이스 AI 챌린지
지원대상	MPW 공정 이용을 희망하는 창업 10년 이내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	SW 개발 역량을 보유한 창업 10년 이내 AI 스타트업
지원규모	5개사	10개사
지원내용	MPW 제작비, MPW 공정 우선 제공 등	협업기업 공동 PoC 및 자금지원 등
협업기업	DB하이텍, SK키파운드리, 삼성전자	LG전자, 인텔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2) **이노웨이브** : 초격차 10대 기술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 파트너 매칭을 위한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고도화 계획 수립

< 이노웨이브 개요 >

- ◆ **(추진목적)** 스타트업·대기업 간 혁신 활동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초격차 프로젝트 독자적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추진
- ◆ **(운영개요)** 공동 프로젝트 결과물이 사업화 성과로 창출되기 위해 수요기업의 구체적인 협업과제 제시 등 수요 중심의 협업 파트너 매칭 프로그램
- ◆ **(수요기업)** 초격차 스타트업과 협업 니즈가 있는 국내·외 대·중견 기업
- ◆ **(지원대상)** 수요기업에서 제안한 협업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 ◆ **(지원내용)** PoC 자금,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수요기업 유통망 활용 판로개척 등

< 프로그램 추진 절차 >

구분	대상	주요내용
리버스 피칭	수요기업	· 초격차 10대 기술 분야별 수요기술 발표
제안서 신청·접수	스타트업	· 수요기업 협업과제에 대한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스타트업	· 협업과제 실현 가능성 등 1차 서류평가 진행 · 최종 선정규모 2~3배수 선정하여 2차 평가 진행
Inno Wave Day	스타트업 스타트업, 수요기업	· 1차 서류평가 선정기업 협업 제안 발표 · 선발예정 스타트업과 수요기업 1:1 Meet-Up · 최종 협업 대상 창업기업 선발
PoC 기획 및 수행	스타트업, 수요기업	· PoC 구체화를 위해 협업 파트너 간 계획 수립 · 협업과제 수요기업-스타트업 수행

3) **초격차 챌린지 신설** : 기술별 대·중견과의 기술개발·검증 등 협업 지원계획에 대해 초격차 10대 기술 분야별로 제안

\* 기술 분야별 협업 예시로 수요처 발굴, 협업 매칭,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해 제안

< 초격차 챌린지 신설 관련 기술별 주요 내용 >

기술분야	운영(제안) 방향
① 바이오헬스	· 신약 개발 및 헬스케어 솔루션 검증 등을 위한 빅파마·병원 등 연계
② 미래 모빌리티	· 품질향상 및 제조 효율화 등의 수요처(완성차 대기업, 협력사 등) 매칭
③ 친환경·에너지	· 기술 고도화 및 실증 등을 위한 국내 에너지 연구소·기업 간 협업
④ 로봇	· 개발 기술 검증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로봇 선도기업 협업
⑤ AI·빅데이터	· 제조, 콘텐츠, 디바이스 등 AI 융합 가능 분야 수요처 발굴 및 연계

4) **초격차 O·I 협의회** : 프로그램 계획 적정성, 수요처 발굴 및 성과 관리 등 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방안 수립

\* 대·중견 담당자, 기술·시장 전문가, 스타트업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주요 안건에 대한 협의회 정기 운영계획 수립

② **자율 프로그램** : 초격차 기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고 협업 성과가 기대되는 국내·외 협업프로그램 자율 제안

1) **국내 프로그램** : 스타트업 개발 솔루션 탑재 등 구체적 협업 니즈가 있는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성과 중심형 프로그램 계획 수립

- 수요처 매칭 및 과제 수행 후 협업 결과물이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전략 제시

2) **글로벌 협업** : 대·중견 해외지사, 글로벌 기업 등과 연계하여 PoC, 거래처 확보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자율 제안

- 개최 국가 선정 배경(사유)과 현지 안착 및 협업 성과 창출 등 프로그램별 KPI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전략 포함하여 제시

3) **멘토링** : 국내외 판로개척, 협업역량 강화, 기술 탈취 보호 등 스타트업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매칭 및 운영 방안 제안

\* 사업계획에 제출한 제안 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스타트업의 원활한 협업 활동 수행 및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자율 프로그램 제안 규모 제한 없음

#### 4 운영비 지원

- ① **기술사업화** : 초격차 프로젝트는 연간 지원하는 스타트업의 수를 기반으로 운영비를 산출하며, 기관별 운영비 지원규모 상이
- ② **개방형 혁신** : 개방형 혁신 주관기관은 초격차 프로젝트에 선정된 전체 스타트업을 통합 지원하는 기관으로, 2,000백만원 내외 지원

< 2025년 기술사업화 및 개방형 혁신 주관기관 운영비 지원(안) >

구분	기술분야	운영비 지급(안)		
		초격차 프로젝트	팹리스 일관지원	합계
기술사업화	1) 시스템반도체	1,000백만원 내외	1,500백만원 내외	2,500백만원 내외
	2) 바이오헬스 - 신약·소재	1,000백만원 내외	-	1,000백만원 내외
	3) 바이오헬스 - 의료기기·헬스케어	1,000백만원 내외	-	1,000백만원 내외
	4)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1,000백만원 내외	-	1,000백만원 내외
	5) 친환경·에너지 - 친환경(ccus 등)	400백만원 내외	-	400백만원 내외
	6) 친환경·에너지 - 에너지 발전·효율화	1,260백만원 내외	-	1,260백만원 내외
	7) 로봇	1,000백만원 내외	-	1,000백만원 내외
	8) AI·빅데이터	400백만원 내외	-	400백만원 내외
	개방형 혁신	2,000백만원 내외	-	2,000백만원 내외

< 2025년 기술사업화 및 개방형 혁신 주관기관 운영비 관련 참고사항 >

- ◆ **(공통사항)** 위 운영비 지급(안)은 지급 예시이며, '25년 초격차 스타트업 선정 이후 운영비 규모 확정 예정 (※ 운영비 지급(안)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후 추후 수정 예정)
- ◆ **(1,000백만원 내외)** 그간 선정된 초격차 스타트업이 있으며, 신규 선정된 주관기관에서 그간 선정된 초격차 스타트업의 잔여 협약기간 동안 지원
- ◆ **(400백만원 내외)** '25년부터 초격차 스타트업을 신규 선정 지원을 시작하는 분야로, 사업 2년차('26년)부터 타 기술분야와 유사한 규모로 운영비 배정 예정
- ◆ **(팹리스 일관지원)** 시스템반도체 주관기관에 지급되는 운영비로, 팹리스 일관지원 관련 성장단계별 팹리스 지원을 위한 비용에 한해 집행 가능

## 2

## 신청자격 및 조건

### 1 신청자격

※ 민간기업은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① **기술사업화** : 연구소, 대학 등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내외부 전문성(기능, 조직, 인프라 등) 보유 기관 (형태 제한 없음)
- ② **개방형 혁신** : 국내외 수요처를 발굴하여 협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 중심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 (형태 제한 없음)

### 2 신청요건

#### < 신규 주관기관 신청요건 >

구분	비고
①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4인 이상 (팀장급 창업지원경력 5년 이상, 창업지원경력 2년 이상 전담인력 2인 이상) ·(전문가단) 기술연구자 등 초격차위원단 20명 이상, 일반 멘토단 20명 이상
시스템반도체	· 위 전담인력(최소 4인 이상) 외 2인의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총 6인의 전담인력 확보(팀장급 창업지원경력 5년 이상 2인 이상, 창업지원경력 2년 이상 전담인력 2인 이상)
② 개방형 혁신	·(전담인력) 5인 이상 (팀장급 개방형 혁신 경력 5년 이상, 창업지원경력 3년 이상 전담인력 4인 이상) ·(전문가단) 현지 전문가 등 초격차위원단 50명 이상, 일반 멘토단 50명 이상
③ 공통요건	·(공간구축) 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기관 내 별도 사무공간 마련 ·(회계처리) 전담기관(창업진흥원) 지정은행(신한은행)에서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기관

\* 시스템반도체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은 1)초격차 프로젝트 운영팀(팀장 1인)과 2)팹리스 일관지원 운영팀(팀장 1인)을 각 운영하며, 총 6인 이내에서 2개 팀을 운영

\*\* (겸직인력) 기술사업화는 제한 없으며, 개방형 혁신은 최대 3인 이내로 구성 가능

- ① **전담조직** : 기관 내 과업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전담인력 최소 4~5인 이상 (겸직인력 규모는 선정기관별 검토를 통해 승인·반려 예정)

\* (전담인력) 추후 기관별 담당 스타트업 수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 상향 예정

\*\* 전담·겸직인력은 반드시 신청 기관 내 소속된 직원으로 구성

\*\*\* 전담인력이란 사업의 참여인력 참여율이 100%를 의미하며, "예정(확보·설치 등)"으로 기재한 사항은 **협약체결일 이후 60일 이내에 전담조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② **전문가단** : 스타트업 선정·평가·지원 등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단 최소 40명 이상 구성하며, 초격차위원단과 일반 멘토단으로 구분

\* (초격차위원단) 초격차 기업 선정, 포럼연사 등 사업 운영상 핵심·대표 위원단 (일반 멘토단) 스타트업 컨설팅, 애로해결 등을 위한 기술·경영 멘토, 심의 참여

\*\* 초격차위원단은 일반 멘토단 활동이 가능하나, 일반 멘토단은 초격차위원단 활동 불가

- ③ **공통요건** : 전담조직의 업무공간 마련, 전담기관 지정 회계처리 수행

### 3

## 신청 및 접수

### 1 분야선택

#### ① 기술사업화 : 8개 세부 기술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

\* 동일 기관에서 2개 이상 기술로 **동시 신청 가능**하나, 기술별 개별 신청을 해야 하며, 2개 이상 기술에 선정될 경우, **기술별 전담조직을 각 구성** (최대 신청 수 제한 없음)

#### ② 개방형 혁신 : 별도 분야 선택 없음 (세부 기술 분야 13개 전체 해당)

### 2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업로드를 위한 서류 준비 (\* 우편 제출 불가)

\* 파일용량이 100MB를 초과하는 서류는 업로드 불가 (용량 주의)

제출서류 목록	주요내용	비고
제출공문	신청기관(대표기관)의 제출 공문	
사업계획서	신청기관과 협력기관의 사업수행계획서	기관장 직인본 제출
증빙자료	사업계획 내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발표자료	사업계획서 기반 발표평가용 발표자료	PPT 혹은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전담·검직 등 사업참여인력별 동의서	인력별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민간기관에 한해 제출

\* 발표자료 미제출 기관은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서(문서)로 진행

\*\* 발표자료는 별도 양식이 없으며, 사업계획서 목차에 따라 자율 제작(PPT, PDF)

### 3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로그인 → 공고 페이지 접속 → 기관별 신청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K-Startup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사업공고 → 모집중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2025년 기술사업화 및 개방형 혁신 주관기관”** 공고 접속 → “사업신청” 클릭

\*\* 별첨된 ‘주관기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

○ **접수기간** : ‘24년 11월 13일(수) ~ ‘24년 12월 5일(목), 15:00까지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 후 신청확인서 발급까지 완료해야하며, 추가 접수 불가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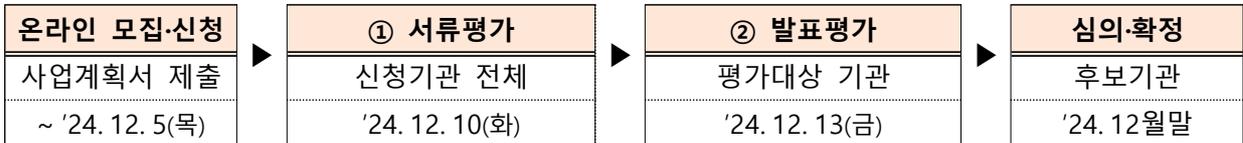
## 평가 및 선정

### 1 평가절차 (※ 기술사업화, 개방형 혁신 동일)

- ① **서류평가** : 신청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등) 기반의 서류평가를 실시,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 (각 2배수 내외)
- ②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대표자(또는 전담조직 팀장)의 발표 및 평가 위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후보기관\*' 선정

\* 후보기관 선정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 선정 확정 예정

#### < 선정 평가 절차(안)>



\* 발표평가는 서류평가 통과기관에 한해 참여하며, 관련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2 평가내용

구분	구분	평가항목	주요내용	배점
기술사업화	서류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고도화', '창업사업화' 성장지원 방향의 타당성	20%
			·'초격차위원회', 기관 내 전문가 등 내외부 네트워크의 규모	20%
			·'프로그램 및 과업' 계획의 우수성	50%
			·전담조직, 협업기관 등 기관 운영 계획의 우수성	10%
			<b>소계</b>	<b>100%</b>
	발표평가	전담조직	·전담·겸직인력의 역량 및 구성 규모	10%
		지원계획	·'기술고도화', '창업사업화' 성장지원 방향의 구체성, 효과성	15%
			·'프로그램 및 과업' 계획의 구체성, 효과성	25%
			·'초격차위원회', 기관 내 전문가 등 내·외부 전문성 활용도	25%
			·외부 네트워크 확보 및 협업계획의 우수성	15%
기관역량	·신청기관의 기술 창업지원 관련 전문성 (이력, 성과 등)	5%		
	·신청기관의 네트워크, 인프라 등 기본 역량 및 사업참여의지	5%		
<b>소계</b>	<b>100%</b>			
개방형 혁신	서류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국내외 대·중견 협업 매칭 지원' 방향의 타당성	20%
			·'초격차위원회', '국내외 대·중견기업' 등 내외부 네트워크의 규모	20%
			·'프로그램 및 과업' 계획의 우수성	50%
			·전담조직, 협업기관 등 기관 운영 계획의 우수성	10%
			<b>소계</b>	<b>100%</b>
	발표평가	전담조직	·전담·겸직인력의 역량 및 구성 규모	10%
		지원계획	·'국내외 대·중견 협업 매칭 지원' 성장지원 방향의 구체성, 효과성	20%
			·'프로그램 및 과업' 계획의 구체성, 효과성	30%
			·'초격차위원회', '국내외 대·중견기업' 등 내외부 네트워크의 우수성	30%
			·신청기관의 기술 창업지원 관련 전문성 (이력, 성과 등)	5%
기관역량	·신청기관의 네트워크, 인프라 등 기본 역량 및 사업참여의지	5%		
<b>소계</b>	<b>100%</b>			

## 5

##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선정완료 이후 평가 중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건 미충족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선정취소 혹은 협약중단 등 가능
-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lt; 주관기관 신청 제한사항 &gt;

1.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회외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2.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3. 교육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
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모든 신청절차(서류 업로드 포함)는 정해진 기한(24. 12. 5(목) 15:00) 내 완료해야하며, 사업신청 시 누락된 정보·증빙서류 등에 대해 서류·발표평가 중 추가 제출 혹은 보완 불가 (제출 서류 기반 평가)
  - ※ 사업 신청 시, 발표자료 제출을 누락한 경우 사업계획서로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평가장에서 진행 예정이며, 신청기관은 서류평가 결과 안내(24. 12. 11(수) 예정)에 따라 발표평가 참여
  - ※ 서류평가 탈락 기관은 발표평가 미참여
- 전담조직 구성 등 신청요건 중 "예정(확보·설치 등)"으로 기재한 사항은 협약체결일 이후 60일 이내에 요건을 충족 해야하며, 기한 내 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혹은 협약 중단 가능
- 선정된 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집행(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 금융거래 제한 등 은행계좌 개설, 사업비 집행 불가 기관은 선정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협력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자격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협약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신청기관) 간 진행
  - \* 모든 사업비는 주관기관(신청기관)에서 관리·집행하며, 협력기관은 단독으로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거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주관기관" 명칭 사용 불가

- 선정된 기관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사업 세부관리 기준,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역할 >**

1. 창업기업 발굴·지원, 창업기업 선정평가, 교육, 멘토링 등
2. 창업기업의 성과목표관리 등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
3. 창업기업의 사업지원금 및 대응자금 집행계획 적정성 등 집행관리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행정 지원
5. 창업기업 사업비 정산 및 관리
6. 창업기업 점검 및 성과평가
7. 창업기업 선정, 사업운영위원회 및 평가 결과, 정산결과 등에 대한 승인 요청
8. 사업종료 후 5년 간 창업기업의 창업성과 관리
9.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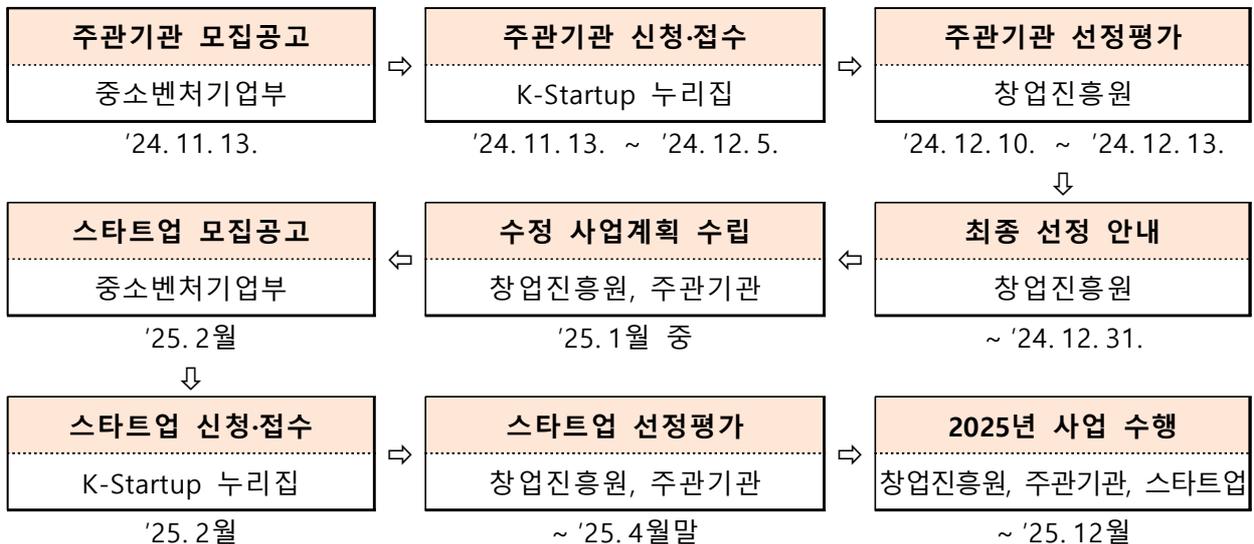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내 제7조 주관기관의 역할

**6 문의처 및 일정**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시스템운영팀)
- 사업 관련 문의 : (기술사업화) 044-410-1681, 1691, 1684 (창업진흥원)  
(개방형혁신) 044-410-1687, 1695, 1683 (창업진흥원)

\*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전담기관(창진원)에 대한 유선·대면 문의 가능

**<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일정(안) >**



\* 연간 사업 운영 상황 등에 따른 변동 가능

**[참고1] 주관기관 사업비 집행기준 (사업 세부관리기준 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주관기관 사업비 집행기준**

비목		주요내용	구성비율
프로그램 운영비		☞ 주관기관의 강점, 역량을 활용하여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통합지침 제26조에 따라 집행	3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격차 창업기업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불가</li> <li>· 비용 집행처가 전담조직과 다른 조직일 때, 주관기관 내부 인프라(인력, 시설, 장비, 기타 서비스 등) 활용을 위한 비용 집행 가능</li> </ul>	
인건비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에 참여하는 전담·겸직인력의 인건비, 단기근로자 수당 등 주관기관의 주관기관과 전담인력의 근로계약 등 내부 보수규정에 따라 집행</li> <li>· (전담인력) 협약기간 내의 월급여(근로·휴가와 관련된 시간외, 연차수당 등 포함), 원천세, 4대보험(주관기관 부담분 포함), 퇴직급여 총당금 등으로 집행</li> <li>· (겸직인력) 겸직인력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퇴직급여 총당금 포함), 원천세, 4대 보험(주관기관 부담분 포함), 겸직인력·단기근로자의 인건비(수당 포함)로 집행</li> <li>· (공통사항) 주관기관은 본 사업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가 명시된 내부결재 문서(인사 발령 공문 등) 및 연봉(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해야하며, 전담인력은 타 사업(업무) 수행 불가하고, 겸직인력은 참여율 100% 이내에서 타 사업(업무) 동시 수행 가능</li> </ul>	주관기관 한도 내
	교육비	☞ 사업에 참여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비로 집행 (겸직인력 불가)	
일반 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 모집·선정을 위한 평가비용, 외부전문가 수당, 소모품비, 홍보비 등 사업 운영을 위한 부대비용</li> <li>· (평가비용·수당) 초격차위원단을 활용한 참여기업 선정평가, 사업운영위원회 등 심의수당은 관리기준 제21조 초격차위원단 수당 지급 기준 표에 따라 집행, 단, 계속기업 정부지원금 배정, 창업기업 성과평가, 사업운영위원회 등 초격차위원단을 제외한 일반 외부 전문가 평가·심의 등의 수당은 통합지침 제26조 제③항에 따르며, 기타 민간 업계 종사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의 경우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li> <li>* 필요 시, 전담조직(전담·겸직인력)에 소속되지 않은 주관기관 내부 직원은 평가·심의 등에 참여 가능</li> <li>· (소모품비)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li> <li>· (홍보비)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 온라인 등) 홍보비, 홍보물(소개자료, 현수막 등) 제작비로 집행</li> <li>· (인쇄비, 수수료 등 기타운영비) 프로그램 등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기타 운영비로 집행</li> <li>*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인쇄비, 유인물비, 간행물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비품 수선비, 전산 사용료(유지보수비 포함) 등</li> <li>* 프로그램별 운영에 필요한 다과, 식대 등 회의비성 비용 집행 불가 (☞ 회의비로 집행)</li> <li>· (특근매식비) 정규 근로시간 외의 근무자를 위한 식대로, 주관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1인 1식 7,000원)</li> <li>· (복리후생비) 기타 주관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비</li> </ul>	

비목	주요내용	구성비율
여비	☞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전담·겸직인력의 국내외 여비로 집행	5% 이하
	· 주관기관 내부 여비지급 규정을 준용하고,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을 준용	
회의비 (업무추진비)	☞ 본 사업과 관련한 창업기업 간담회, 사업 운영을 위해 내외부 관계자와의 업무협의 등에서 소요되는 회의비로 집행	5% 이하
자산 취득비	☞ 주관기관의 사무용 기자재, 가구 등 자산취득비로 집행	5% 이하
	· 주관기관은 자산 구매 시 주관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하며, 사업 비로 구매한 자산은 주관기관의 자산관리대장 및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하여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구매한 자산의 유지, 관리와 관련한 자료 제출 및 현장점검을 요청할 시 응해야 함	
시설 유지보수비	☞ 주관기관 지원공간, 사무공간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냉난방 공사, 인테리어 보수 등에 소요되는 시설유지보수비로 집행	5% 이하
	· 주관기관은 자산 구매 시 주관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하며, 사업 비로 구매한 자산은 주관기관의 자산관리대장에 등록하여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구매한 자산의 유지, 관리와 관련한 자료 제출 및 현장점검을 요청할 시 응해야 함	

**[참고2] 주관기관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주관기관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

비목	세목	한도	보조세목	정의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30% 이상	일반수용비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사무용품, 인쇄, 전문가 활용비, 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경비 등
			일반용역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비용
			임차료	자율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관하는 장소, 시설 및 장비, 버스 등의 차량 임차료
			사업추진비	자율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다과구입 등 행사 경비
			포상금 등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R,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제공되는 상금
인건비	인건비	기관 한도 내	보수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정규직)에 대한 보수
			기타직보수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사업 수행을 위한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직에 대한 보수
			복리후생비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의 4대보험 비용
운영비	운영비	기관 한도 내	일반수용비	창업자 모집·선정·지원을 위한 평가비용 및 수당, 소모품비, 홍보비, 인쇄비, 각종수수료, 회계감사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 통신요금 등
			특근매식비	사업 수행을 위한 특근하는 인력에 대한 매식비
			일반용역비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비용
			임차료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장소, 시설 및 장비, 버스 등의 임차료
			복리후생비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에 대한 법정 복리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등 일반적 복리후생비
여비	여비	5% 이하	국내여비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의 국내여비
			국외여비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의 국외여비
자산취득 및 시설유지비	유형자산	5% 이하	자산취득비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사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취득경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5% 이하	사업추진비	동 사업 관련 회의 및 간담회비